【 10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5.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IMF체제하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실화된 지방산업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

□ 주요골자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22조의2).

나.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안 제22조의 3)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업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 설>	제22조의2(산업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 ·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第2節 地方稅

● 地方稅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61·12·8	法律第 827號
改正	1962·12·29	法律第1243號
	1963·12·14	法律第1514號
	1966·8·3	法律第1803號
	1967·10·28	法律第1958號
	1967·11·29	法律第1977號
	1970·1·1	法律第2149號
	1973·3·12	법률제2593호
	1974·12·27	法律第2743號
	1976·12·31	法律第2945號
	1976·12·31	法律第2950號(國有財産法)
	1978·12·6	法律第3154號
	1979·4·16	法律第3160號
	1979·12·28	法律第3174號
	1981·1·29	法律第3357號(鑛業法)
	1981·12·31	法律第3488號
	1982·11·29	法律第3572號(韓國觀光公社法)
	1984·8·8	法律第3752號(産業硏究院法)
	1984·12·15	法律第3754號(行政訴訟法)
	1984·12·24	法律第3757號
	1986·12·31	法律第3878號
	1986·12·31	法律第3910號(觀光振興法)
	1986·12·31	法律第3912號(自動車管理法)
	1988·4·6	法律第4007號
	1988·12·26	法律第4028號
	1988·12·31	法律第4064號(韓國담배人蔘公社法)
	1988·12·31	法律第4066號(人蔘協同組合法)
	1988·12·31	法律第4069號(保險業法)
	1988·12·31	法律第4073號(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
	1989·6·16	法律第4128號
	1990·1·13	法律第4212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1990·1·13	法律第4216號(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1990·4·7	法律第4225號
	1990·4·7	法律第4228號(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12·31	法律第4269號
	1991·1·14	法律第4332號(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
	1991·12·14	法律第4415號
	1993·6·11	法律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3·12·27	法律第4611號
	1993·12·27	法律第4655號(韓國資源再生公社法)
	1994·1·7	法律第4720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1994·12·22	法律第4794號
	1994·12·31	法律第4856號(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1995·1·5	法律第4927號(交通安全振興公團法)
	1995·8·4	法律第4960號
	1995·12·6	法律第4995號
	1995·12·29	法律第5091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1995·12·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1·13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1997·8·30	法律第5406號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1997·12·24	法律第5476號(韓國産業人力公團法)
	1998·12·28	法律第5598號(軍納에관한法律廢止法律)
	1998·12·31	法律第5615號

⑦青少年基本法에 의하여 青少年修鍊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이 青少年修鍊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青少年修鍊施設로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⑧軍人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軍人共濟會·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地方行政共濟會 및 大韓敎員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敎員共濟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員用 共同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全文改正 97·8·30〕

第3節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減免

第274條 (法人의 地方移轉에 따른 減免) ①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이하 이 節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設置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法人이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賣却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이하 이 節에서 "大都市"라 한다)외의 地域으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②大都市내에 登記되어 있는 法人이 大都市외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 移轉에 따른 法人登記 및 不動産登記에 대하여 登錄稅를 免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30, 98·12·31〉

〔本條新設 94·12·22〕

第275條 (工場의 地方移轉에 따른 減免) ①大都市내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그 工場을 閉鎖하고 大都市외의 地域으로서 工場設置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地域으로 移轉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本條新設 94·12·22〕

第276條 (産業團地에 대한 減免) ①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고자 하는 者(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

고, 그 不動産에 대한 財産稅와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工場用 不動産의 取得日부터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場用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賣却하는 경우(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買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가 되는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産業團地를 造成한 후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減免한다. 다만, 産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의 取得日부터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團地를 造成하지 아니하거나, 工事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年이내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1. 産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 및 産業團地 造成工事가 완료된 후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한다.
2. 産業團地내에서 新築하거나 增築한 工場用 建築物에 대한 財産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3. 産業團地 造成工事가 施行되고 있는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4. 産業團地 造成工事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31〉

④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 및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開發·造成하여 分讓 또는 賃貸할 目的으로 취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買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不動産(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團地公團의 경우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3項第4號 및 同項第6號의 事業用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開發·造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

을 追徵한다.

〔全文改正 97·8·30〕

第277條 (觀光團地開發등에 대한 減免) ①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土地 및 建築物의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觀光團地開發事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促進地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者가 同法에 의하여 告示된 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財産稅와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成立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賣却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新設 97·8·30〉

〔本條新設 94·12·22〕

第278條 (備蓄·供給用 土地에 대한 減免) ①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土地公社와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住宅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第三者에게 供給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改正 95·12·29 法5109〉

②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水資源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分讓을 目的으로 취득하는 團地造成用土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③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港灣施設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新設 95·12·6〉

〔本條新設 94·12·22〕

第279條 (宅地開發事業地區내의 公共施設物등에 대한 減稅) ①第278條 및 第2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중 宅地開發事業地區 및 團地造成事業地區내의 土地 또는 建築物로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와 公共施設用地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産業立地 및 開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制定 1990·1·13 法律第4216號
改正 1990·12·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3·8 法律第4358號(港灣法)
1991·12·14 法律第4429號(水道法)
1993·3·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3·8·5 法律第4574號
1994·3·24 法律第4748號(砂防事業法)
1995·1·5 法律第4891號(에너지利用合理化法)
1995·12·29 法律第5111號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과 産業의 合理的 配置를 통하여 균형있는 國土開發과 持續的인 産業發展을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2. "知識産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研究開發業·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廣告物作成業·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 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3. "情報通信産業"이라 함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4. "資源備蓄施設"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등과 관련 敎育·情報處理·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文化·醫療·觀光·體育·福祉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1. 産業立地政策의 기본방향
2. 地域別·業種別·産業團地 種類別 供給展望
3. 地域別·業種別·産業團地 種類別 産業用地의 供給에 관한 사항
4.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第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條의3 (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産業立地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와 공동으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關聯機關의 長에게 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産業立地情報網의 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④産業立地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3章 工業團地의 지정

第6條 (國家産業團地의 지정) ①國家産業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産業團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國家産業團地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産業團

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産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産業團地의 지정후에 第3號의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第8號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産業團地의 명칭·位置 및 면적
2. 産業團地의 指定目的
3.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4. 事業施行方法
5. 主要誘致業種
6.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基盤施設計劃
7. 財源調達計劃
8.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全文改正 95·12·29〕

第7條 (地方産業團地의 지정) ①地方産業團地는 市·道知事가 지정한다. 〈改正 95·12·29〉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産業團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地方産業團地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④市·道知事는 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그 지정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⑤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3·8·5, 95·12·29〉

⑥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過程에서 關

係機關간의 意見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으며, 調整을 요청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7條의2 (産業團地지정의 告示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書類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産業團地로 지정되는 地域안에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內容에 그 土地등의 細目을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8·5〕

第8條 (農工團地의 지정) ①農工團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한다. 〈改正 93·8·5〉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9條 (工業地域의 活用)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産業團地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第10條 (住民등의 意見聽取)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産業團地指定權者"라 한다)은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聽取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 의견 聽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民間企業등의 産業團地지정요청)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

●外國人投資促進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制定 1998·9·16 法律第5559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를 말한다.
2.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外國人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참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 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母企業 및 그 母企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出資關係가 있는 企業이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5年이상의 借款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6.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外國投資家가 出資한 企業을 말한다.
7. "出資目的物"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投資家가 株式등을 所有하기 위하여 出資하는 것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對外支給手段 또는 이의 交換으로 생기는 內國支給手段
   나. 資本財

여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

5. 外國人이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를 株式등으로 轉換한 경우

②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8條 (長期借款方式의 外國人投資) ①外國人은 第2條第1項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중 外國人投資金額·外國人投資比率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3章 外國人投資에 대한 지원

第9條 (法人稅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强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

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③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年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추 100)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다음 3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⑥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外國人·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⑧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⑨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 (關稅등의 免除) ①第9條第1項 各號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資本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 內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2. 外國投資家가 出資目的物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特別消費稅

(수 100)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994-203호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를 지정, 개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양주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경 기 도 지 사

1 9 9 4. 7. 16

1. 지방공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공업단지의 명칭 :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

나. 위치 및 면적

o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일원

o 면 적 : 35,000㎡ (10,587평)

2. 지정목적

○ 양주군내 산재한 동관련 금속공장을 이전집단화 함으로써 협동 협력화로 인한 생산능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314

나. 상호 및 대표자 : 신한금속(이 광 원)

나. 공업단지의 위치 · 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o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46번지 일원

o 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 전 체 면 적 : 54,583㎡

· 관리대상면적 : 54,583㎡

다.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o 사업시행자 : 동두천시장

o 조성기간 : '93. 5 ~ '93. 12

라.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o 음 · 식료품, 섬유, 목재 · 가구, 조립금속 · 기계, 전기 · 전자등

마. 관리기관 : 동두천시

. 상수지방공업단지

가. 공업단지의 명칭 및 종류

o 명 칭 : 상수지방공업단지

o 종 류 : 지방공업단지

나. 공업단지의 위치 · 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o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626-3번지 일원

o 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 전 체 면 적 : 59,162㎡

· 관리대상면적 : 59,162㎡

다.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o 사업시행자 : 양주군수

o 조성기간 : '90. 4 ~ '92. 10

경기도 고시 제 40 호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된 동두천 상봉암지구, 양주 상수지구, 포천 신평지구의 공업용지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2. 14.

경 기 도 지 사

1. 상봉암지방공업단지

가. 공업단지의 명칭 및 종류

o 명 칭 : 상봉암지방공업단지

o 종 류 : 지방공업단지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람	기관의장

제 130 호

1999년 3월 22일 (월)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9-72호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2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9-77호 양주군군세조례 2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9-78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 3

고 시

양주군 고시 제1999-18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4

회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30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9-72호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22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연발생유원지내 각종 행위시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정비, 주민 생활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자연발생유원지내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변경, 물품판매 등 상행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삭제(조례 제6조)
   자연발생유원지내 행위시 허가조항 삭제에 따른 허가취소, 권리의 양도금지 조항 등 관련조항 삭제(조례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820-2140, 820-2141, 총무과 국민운동지원부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 공고 제1999-77호

양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1998.12.31)에 맞추어 군세조례의 관리·운영상 불부합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양 주 군 보

제 130 호

3.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나. 자동차세의 세율중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안 제38조제1항제1호).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세액	배 기 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다.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중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제39조제3항)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분리과세 과세대상 토지중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개정함.(안 제74조, 제7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218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 공고 제1999-78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일

양 주 군 수

양 주 군 보

제 130 호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IMF체제하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실화된 지방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남면상수지방산업단지

② 은현도하지방산업단지(안 제22조의 2)

나.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안 제22조의 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218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고 시

양주군 고시 제1999-18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유수인용(주수)허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11일

양 주 군 수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부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IMF체제하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실화된 지방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

□ 주요골자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22조의2).

나.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안 제22조의 3)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세법 제276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내지제5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99. 3. 22 ~ 4. 1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 첨"

○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